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3. 15 선고 2020가단114470(본소), 2020가단118496(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기타(금전)]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용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헌 담당변호사 김기태

변 론 종 결 2023. 2. 1.

판 결 선 고 2023. 3.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0. 12. 29. 접수 제67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제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55. 11. 9.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1. 5.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제3,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0. 2. 5. 분합을 원인으로 1981. 7.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증인 D, E이 참석한 가운데 망인이 2007. 9. 28. 망인 소유의 부동산 일부를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07년 제2627호)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의 부인과 피고의 부인은 자매이고 원고와 피고는 동서지간인데, 피고는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0. 12. 29. 피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 망인은 2011. 4. 11.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는 G, 원고, 망 H, I, J, K, L이 있다.마.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2020. 6. 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단5053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다른 형제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마쳐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원고는 소유자인 망인의 상속인 중의 1인이고,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명의신탁 받음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도 이와 관련하여 4,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의 등기말소의무와 원고의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만을 이전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고, 그 세금도 원고가 납부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고,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보전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법원의 천안서북구청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2. 5. 기초연금 신청을 하였으나 그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하면, 피고의 기초노령연금 관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미달하는 사실 및 피고에게 월 35,240원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기초연금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스스로 그 명의신탁약정을 승낙한 결과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기초연금 삭감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와 원고의 기초연금 삭감액 상당 손해배상 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소송의 진행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따라 각자 부담한다.

판사 최재원

별지

1) 피고는 2023. 1. 31. 반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3. 2. 1. 제4회 변론기일에서 위 반소취하에 동의하였다.